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 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입안예고

환경부 교통환경과

환경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과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자동차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을 입안예고했다. LPG자동차 관련 내용을 발췌 게재한다.

1. 주요내용

- 가. 제작사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기준의 적용대상 자동차를 10인승 이하의 승용·승합자동차로 명확히 함.
- 나. 제작업체로 하여금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중 한 기준을 선택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준이 적용되는 '12년부터 판매량을 기준으로' 12년에는 30%, '13년에는 60%, '14년에는 80%, '15년에는 10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적용하도록 함.
- 다. 자동차 제작업체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자동차를 동일차종군으로 구분하여 시험기관으로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시험받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승인된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경우 자체적으로 에너지소비효율 및 온실가스 배출량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라. 자동차 제작업체는 매년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달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실적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의 산정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함.

마. 해당 연도의 기준을 달성한 경우와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각각 그 차이분 만큼을 일정기간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상환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제작업체간 거래를 허용함.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제작업체(수입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준수하여야 하는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과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정하고, 해당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략)

제13조(실적의 산정방법) ① 자동차제작업체는 당해연도 판매한 자동차에 대한 평균에너지소비효율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한 실적을 다음 각호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 계산시 LPG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에너지소비효율의 1.26배로 적용한다.

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g/km) = $\frac{\sum(\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times \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온실가스 배출량(g/km)})}{\text{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
2. 평균에너지소비효율(km/l) = $\frac{\text{대상자동차 총 판매량(대)}}{\sum(\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판매량(대)} / \text{대상자동차 종류별 에너지소비효율(km/l)})}$

② 자동차 제작업체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계산시 온실가스 저배출 또는 고연비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산정할 수 있다.



1.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미만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46.9km/l, 경유자동차 53.8km/l, LPG자동차 35.3km/l 를 초과하는 자동차 및 전기자동차의 경우 1대당 3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2. 2015년까지 자동차 제작업체가 해당 연도에 판매한 자동차 중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km이상 100g/km이하 또는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이 유종에 따라 휘발유자동차 23.4km/l 이상 46.9km/l 이하, 경유자동차 26.9km/l 이상 53.8km/l 이하, LPG자동차 17.7km/l 이상 35.3km/l 이하인 자동차의 경우 1대당 2대의 판매실적으로 산정한다.

③ 자동차제작업체는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을 위해 적용한 기술 중 제8조의 시험방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동차 제작업체가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 효과 및 에너지소비효율 향상에 대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 산정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 자동차 제작업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해 해당 연도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실적이 기준을 달성한 경우에는 초과달성분,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달성분으로 한다.

1. 온실가스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2. 에너지소비효율 초과달성분(또는 미달성분) =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 평균에너지소비효율) × 기준 적용 대상 자동차 판매량

⑤ 자동차 제작업체가 제5조에 따라 준수하고자 하는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업체의 실적을 재산정하여 자동차 제작업체의 초과달성분 또는 미달성분을 계산한다.

(이하생략)

부 칙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